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광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윤대영 전화 062-231-4332 / 팩스 0502-193-7661	보 도 자 료 2020. 3. 27.(금)

제 목	자가격리조치 등 위반 감염병예방법위반사범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▣ **광주지방검찰청(코로나19 대응단)은 금일(3. 27.)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어 자가치료.격리조치 및 입원치료조치를 받던 중 이탈한 감염병예방법위반사범 2건 2명을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**

Ⅰ 감염병예방법위반사건 개요

● 피고인 A(23세, 헬스트레이너)

- '20. 2. 16.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코로나19 확진자(31번)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(2. 21.~3. 1.)되었으나 2. 24.~2. 26. 주거지를 이탈하여 근무지인 B휘트니스센터에 출근하는 등 자가치료 및 격리조치 위반

● 피고인 B(23세, 무직)

- '20. 2. 22. 19:32경 '신천지 신자로서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'는 피고인 주장에 따라 감염병의사환자로 분류되어 음압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탈한 후 약 59분 동안 광주 시내를 배회하는 등 입원치료조치 위반

Ⅱ 수사 경과

- **피고인 A 관련(광주 거주)**

- ’20. 2. 26. 광주 서구 보건소 수사의뢰 [광주서부경찰서]
- ’20. 3. 12. 사경 기소의견 송치
- ’20. 3. 12.~20. 검찰, 피의자 조사 등 보강수사

※ 피고인 A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

- **피고인 B 관련(의정부 거주)**

- ’20. 3. 4. 광주동부경찰서, B 입건(112신고)
- ’20. 3. 16. 사경 기소의견 송치
- ’20. 3. 16.~25. 검찰, B의 대구방문 여부 등 보강조사

※ 피고인 B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되었으며, B의 중국인 접촉 및 대구 방문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

Ⅲ 참고 사항

- 광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검찰업무 수행을 위해 코로나19 대응단(단장 검사장)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범죄대응을 강화하였음

- 우리 청은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대체제도 확대,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임 ▨